

제2항에서 “그 설치·명칭·조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설치근거에 의거 현재 21개 소방서에 4,278명(남자 2,454명, 여자 1,824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 주요활동업무는 소방활동보조, 주민자율소방의식 고취 등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음.

나. 의용소방대 수당 및 보상금

- 활동수당 및 치료, 장제, 유족, 장해시에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01년도 의용소방대원의 피복비, 급량비, 회의비, 여비 등의 명목으로 6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부녀소방대”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되, “남성대원”과 “여성대원”으로 구분 설치토록 하고,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부녀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소대는 소방서별로 설치하되, 남성대원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별도로 설치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의용소방대” 또는 “○○소방서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14
----------	-----

2001. 3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2001년 3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99. 8. 31)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조문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고(案 제24조),
- 나) 시장이 주민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案 제31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영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99. 8. 31 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

- 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사와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

- 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중)

○본 개정조례안중,

-案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8월 31일자 로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우리시 조례중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규정한 조례는 본 조례를 포함하여 모두 6건이고, 그 현황은 별지1과 같으며 이번 동 조례 개정시 모두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6건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번 회기중에 별도로 개정할 예정이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위의 개정내용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案 제31조(시장이 주민에게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써 진작 삭제되었어야 할 조항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1명, 출석위원 9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